

개선사유서의 제출 대상 및 시기(제21조제4항 관련)

1. 측정기기를 교정하는 경우

가. 제출시기: 교정 전

나. 개선사유: 표준용액을 이용한 검·교정 및 검량선 확인 등 측정기기 성능확인 및 교정

2. 측정기기를 청소하는 경우

가. 제출시기: 청소 전

나. 개선사유: 시료채취조 청소, 센서류의 전극 세척, 튜브 등 소모품 교체

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

가. 정도검사

1) 제출시기: 검사 전

2) 개선사유: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 수검

나. 설비점검

1) 제출시기: 점검 전

2) 개선사유: 전기설비 안전점검, 수전설비 보완공사 등 사전 계획된 설비점검

다. 비정상 상태정보 발생

1) 제출시기: 사유 발생 후 8시간 이내

2) 개선사유

가) 통신불량: 측정기기의 전원 단절, 통신회선 불량 등 점검

나) 작동불량: 시료·시약의 미공급, 주요부품 고장 등 점검